

# 꿀벌 화분교배사업 표준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우건석, 이명렬, 최현정, 외4명

## 〈부록 3〉 꿀벌 화분매개 용역 계약서(미국)

날짜 \_\_\_\_\_ 년  
양봉농가  
성명(서명) \_\_\_\_\_  
주 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재배농가  
성명(서명) \_\_\_\_\_  
주 소 \_\_\_\_\_  
전화번호 \_\_\_\_\_  
봉군 주문량  
A급 봉군의 임대료 \_\_\_\_\_  
B급 봉군의 임대료 \_\_\_\_\_  
벌과 부대시설의 이동에 대한 보상금 \_\_\_\_\_  
총 임대료 \_\_\_\_\_  
작 물 명 \_\_\_\_\_  
작물생산지 주소 \_\_\_\_\_  
벌통을 놓는 방식은 \_\_\_\_\_  
로 한다.

재배 농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봉군을 설치할 날짜는 \_\_\_\_\_ 일 이전에 양봉농가에게 알린다.
2. 봉군을 회수할 날짜는 \_\_\_\_\_ 일 이전에 양봉농가에게 알린다.
3. 봉군을 설치한 날 임대료의 반액을 지불한다.
4. 임대료 잔액은 봉군 설치 후 \_\_\_\_\_ 일 이내에 한다.
5. 잔액 지불이 끝날 때까지는 잔액 금액의 한달 예금이자액의 1%를 지불한다.
6. 봉군을 임대한 기간 동안은 무독한 농약만 사용할 것이며, 양봉농가의 동의 하에만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웃 밭에서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도 미리 양봉농가에게 알려야 한다.
7. 벌을 위한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8. 가축이나 사람에 의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공유한다.
9. 임대기간 중 일어나는 벌침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유한다.

양봉농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재배농가가 요구할 경우, 벌통을 열어 벌의 수와 봉군의 활동력을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
2. 화분매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일에서 최대 \_\_\_\_\_ 일 정도까지 벌통을 유지한다.

이 기간 후에는 벌통을 회수하든지 또는 재계약을 한다.

3. 봉군의 건강 관리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부록 4〉 화분매개 봉군 임대 계약서(호주)

1. 양봉업자 (1) \_\_\_\_\_ 는 (2) \_\_\_\_\_ 식의 벌통을 (3) \_\_\_\_\_ 에 있는 (4) \_\_\_\_\_ 소유 (5) \_\_\_\_\_ 헥타의 (6) \_\_\_\_\_ 에 헥타당 (7) \_\_\_\_\_ 통의 벌통을 (8) \_\_\_\_\_ 부터 (9) \_\_\_\_\_ 까지 화분매개 목적으로 임대한다.

- (1) 양봉업자 성명
- (2) 벌통의 종류 예) 10매 표준소상 2단 계상
- (3) 벌통을 임대 받은 밭/과수원의 주소지
- (4) 벌통을 임대 받은 재배업자 성명
- (5) 벌통을 임대 받은 밭/과수원의 전체 면적
- (6) 밭/과수원 및 재배 작물명 예) 딸기 밭, 사과 과수원
- (7) 임대하는 벌통의 총 개수를 (5)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
- (8), (9) 임대 기간

양봉업자는 벌통의 임대 후 즉, 벌통을 상기 계약서상의 명기된 장소에 설치한 후 일어난 농약에 의한 꿀벌의 감소 또는 기타 여러 원인에 의한 꿀벌의 감소에 따른 재배업자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양봉업자는 일벌의 주 비행거리인 1,500m 이내에서 꿀벌에 해를 끼치는 농약이 사용될 경우, 재배업자에게 통보한 후, 벌통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농약의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농약으로부터 자신의 꿀벌을 보호할 목적의 일체 행동을 언제라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재배업자는 양봉업자에게 계약서 상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

2. 재배업자는 계약 기간동안 양봉업자에게 통보한 후, 임대받은 벌통 및 꿀벌의 상태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제3의 검증된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받을 수 있다.
3. 양봉업자는 계상설치, 채밀 등의 활동을 통해 꿀벌이 화분매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 유지할 책임이 있다.
4. 재배업자는 꿀벌이 살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꿀벌에게 물을 꾸준히 공급할 의무가 있다. 양봉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꿀벌의 화분매개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벌통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5. 재배업자 \_\_\_\_\_ 는 상기 계약기간 동안 벌통 당 \$ \_\_\_\_\_



남은 잔금을 \_\_\_\_\_ 를 지불한다. 대금은 별통을 설치할 때 \$ \_\_\_\_\_, 남은 잔금을 \_\_\_\_\_ 까지 지불하는 식으로 결제한다. 상기 계약 이후, 별통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통 위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별통 당 \$ \_\_\_\_\_ 를 지불한다.

**<선택사항>**

- 재배업자 \_\_\_\_\_ 는 꿀벌의 화분매개로 인해 얻은 작물 생산량이 예상 수확량을 초과할 시, 수확량 중 %는 꿀벌을 임대해 준 양봉업자 \_\_\_\_\_ 의 몫임을 인정한다. 예상 수확량은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을 고려하여 예상한 작물의 수확량을 말한다.
- 6. 재배업자가 수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예상 수확량을 산출한다.
- 7. 상호간 계약에 의해 꿀벌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작물 수확량의 현격한 감소가 발생한 때에도 재배업자는 양봉업자에게 계약한 봉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 8. 이 계약서의 재배업자 또는 양봉업자 어느 한 쪽에 의한 내용의 변경 및 타인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다.

**※ 계약서 상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들.**

- 1. 계약 당사자인 양봉업자, 재배업자의 성명, 주소, 별통이 설치될 장소의 위치 및 재배 작물의 종류
- 2. 임대 별통의 수, 상태
- 3. 별통 설치와 회수 날짜
- 4. 별통을 설치한 위치와 수를 표시한 지도
- 5. 별통이 설치된 장소로 접근 가능한 정확한 도로 지도
- 6. 작물 재배에 관련한 여러 활동과 특히 농약 사용으로부터 꿀벌, 별통을 보호할 재배업자의 의무 조항
- 7.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꿀벌, 별통을 보호하고 별통에 지속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재배업자의 의무조항
- 8.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일시, 지급 장소, 액수
- 9. 재배업자와 양봉업자의 가능한 통신 수단(전화, 팩스, 인터넷 주소 등)
- 10. 초과 이익, 초과 서비스에 대한 보상
- 11. 대금 지연, 꿀벌의 손상, 계약서 상의 합의 미이행(합의 날짜에 별통을 설치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는 등 계약 당사자간 합의된 의무 조항 불이행)에 따른 벌금.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재배농가 \_\_\_\_\_  
양봉농가 \_\_\_\_\_

**<부록 5> 꿀벌 화분매개 용역 시행 규정(호주)**

재배업자는 시행규정을 따르는 양봉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화분매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행규정을 따르지 않는 양봉업자와의 계약은 재배자에게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화분 매개 사업에서 사용하는 별통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며 외관상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 임대하는 별통 내의 꿀벌은 공격적이지 않은 온순한 것이어야 한다.
- 3. 별통 내의 꿀벌 봉군은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알을 낳는 여왕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알, 유충, 번데기에 미국부저병(AFB)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한다.
  - 아래 표와 같은 최소한의 유충 소비수 및 착봉 소비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별통 종류	최소 유충 소비수	최소 착봉 소비수
10매 표준소상 1단	6	7
8매 표준소상 1단	5	6
10매 표준소상 2단	6	12(5매계상)
8매 표준소상 2단	5	10(4매계상)
4매 교미상	2	3

- 4. 별통은 교미상인 경우와 특별히 8매 또는 10매 표준 단상 별통에 적합한 환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단 계상이어야 한다.
- 5. 양봉업자와 재배업자는 서면 계약서에 각자의 요구 및 필요사항(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기술해야 한다.
- 6. 별통으로부터 먼 곳까지 활동하는 벌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원을 마련해야 한다.
- 7. 별통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밭/과수원의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밭/과수원의 중앙에 설치한다.
- 8. 양봉업자는 도로변이나 공공건물 근처에 별통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9. 양봉업자는 시행규정에 따라 별통을 임대하는 일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에 대해, 그리고 별통, 꿀벌에 관해 재배업자를 교육할 기회를 갖는다.
- 10. 재배업자는 몇 통의 별통을 임의로 개봉함으로써 위 3 조항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배업자는 별통을 설치한 후, 꿀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한다.